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22
----------	-------

발의연월일 : 2024. 1. 29.

발 의 자 : 이원욱 · 오영환 · 고영인
김철민 · 김종민 · 양향자
윤미향 · 한정애 · 김영주
양정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 지원을 하고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이며, 국가의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서 발전해 나아가야 함.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민간 택시를 이용하기 쉽지 않아 이용 편의성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임.

교통약자 이동 수단 문제는 궁극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적용된 차량의 보편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비장애 구분의 벽이 허물어져야 함. 해외 사례로 일본의

UD택시, 대만의 유니캡, 영국의 블랙캡 등은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정의하고(안 제2조제9호 신설),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함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 차량이 배치되도록 노력하며(안 제16조제1항),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 부양가족이 유니버설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거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설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의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3항 신설 및 제16조의2제2항 신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를 말한다.

제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에 적용되는 사항은 달리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또는 교통약자를 부양하는 가족이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거나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차량 구매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 <u>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u> ”이란 <u>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를 말한다.</u>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 ~ ⑧ (생략)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 ----- ----- ----- -----. <u>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u>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⑩ ~ ⑫ (생략)

<신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

- 이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에 적용되는 사항은 달리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 ⑫ (현행과 같음)

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또는 교통약자를 부양하는 가족이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거나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

-----지원하여야 한다. -----

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
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차량 구매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